

복지국가 스웨덴의 장례 복지 제도 분석: 교회와 가족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오 지 민**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의 공공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장례 제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자료와 민간 자료, 학술자료 등 여러 유형의 문헌자료를 수집 및 내용 분석하여 스웨덴 장례 문화를 둘러싼 주요 행위 주체가 ‘국가-교회-기업-가족’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특별히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에는 ‘교회’라는 기관이 장례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최근 교회가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장례비(세금)로 운영되는 매장지 관리의 공적 역할과 다른 하나는 교인이나 비교인을 위한 장례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적 역할을 통해 교회 서비스가 시장으로 진입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장례 문화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의미는 ‘확장된 가족’으로서 친밀성과 신뢰,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족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스웨덴 장례 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교회의 시장 진입’과 ‘가족

* 이 논문은 2023년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사회정책과 사회복지> 수업에서 기획되었으며, 2024년 한국문화사회학회 봄학술대회 발표 후 수정·보완된 것이다. 이 논문에 대하여 세심한 논평으로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관계의 확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복지국가 이론에서 스웨덴 모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주제어: 복지국가, 장례,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교회, 가족

1. 들어가는 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개인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이 문장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복지국가 논의 가운데 많은 부분 설명이 부족한 ‘죽음’의 문제, 즉 ‘장례 복지’에 주목한다. 장례는 한 사회의 도덕과 규범, 가치 체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생활양식이다. 그에 따라 장례 문화는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장례 정책은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Valentine and Woodthrope, 2014).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국가 이론은 주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 보험 제도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돌봄이나 결혼, 장례와 같은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은 복지 제도의 주요한 주체를 ‘국가와 시장’으로 한정 지음으로써 탈상품화(시장으로부터 해방)와 탈가족화(전통적 가족으로부터 해방)의 수준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별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이론이 공공서비스를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복지 제공자 중 주요한 주체인 ‘교회’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설명과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국가-교회-기업-가족’이 장례 맥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여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모델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언급되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대표 국가인 스웨덴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장례 정책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복지국가 이론이 가정하는 ‘국가-시장’의 관계를 넘어서 ‘국가-교회-시장-가족’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정책의 ‘표적화 또는 보편화’¹⁾라는 기존의 복지국가 쟁점을 보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의 장례 복지정책의 특징은 무엇이며 교회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스웨덴 장례 복지에 대하여 국가-교회-기업-가족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들 간의 갈등은 존재하는가? 셋째, 스웨덴 장례 제도에 배태되어 있는 가족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가?

2. 복지국가의 사회정책과 장례

장례에 관한 사회정책 연구는 주로 장례비용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와 장례 산업의 불공정성 문제, 복지국가 유형별 장례 정책 비교 분석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빈곤층의 장례 문제 관련하여 Thompson and Yeung(2015)은 장례식 빈곤과 장례 복지 정책이 주류의 복지 논쟁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특별히 뉴질랜드 사회 맥락에서 장례식 비용 충당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과 정부 지원의 적정 수준을 분석하였다. Drakeford(1998)는 현대 영국 장례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가 점차 침식되어 갔음을 논하면서 장례식에서의 빈곤 문제와 사회적 배제 문제를 제기하였고, Foster and Woodthrope(2013; 2016)는 영국의 사회정책이 사망 직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으며, 영국 인구 노령화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례식 자금 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특히 장례 비용이 가족 내 긴장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가족이 장례식의 재정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비판

1) Korpi and Palme(1998)는 복지국가의 두 가지 쟁점으로 ‘표적화 문제’(빈곤층만을 위해 조직되어야 하는지)와 ‘보편화 문제’(모든 시민을 위해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제기한 바 있다.

하면서 저소득층의 ‘좋은 배움’이 가능하기 위한 장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집중 조명하는 연구의 경우, 장례 산업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거나, 협동조합과 같이 대안의 산업을 기획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특징을 보인다. 예컨대, Slocum(2018)과 Marsh(2018)는 미국의 장례 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며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부도덕한 영업 관행이나 불투명한 가격 정책 등 장례 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제기하고(Slocum, 2018), 시신 방부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장례서비스의 전문화와 그에 발맞춘 장례지도사 면허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의 자유로운 장례식 선택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Marsh, 2018). 소비자 문제와 장례비용의 불평등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업 지배력으로부터 대항하는 협동조합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 Audebrand and Barros(2018)는 캐나다 퀘벡에서 발생한 장례 협동조합을 조사하여 불공정한 장례서비스 구조를 혁신하는 사회운동 모델을 소개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유형별 장례 정책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연구로는 Valentine and Woodthorpe(201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 체제 유형을 기반으로 ‘저소득 시민 장례 복지’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는데,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경우 보편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국가의 장례 비용 지원으로 평등과 사회 연대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 모델 유형론을 장례 정책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Esping-Andersen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 즉, Esping-Andersen이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교회와 가족의 역할을 불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Valentine and Woodthorpe의 연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례식을 수행하는 주요한 주체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 또한 장례식 수행 주체 간의 갈등과 긴장과 같은 관계성 분석이라는 점에서, Walter(2005)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서구 사회의 장례 제도 역사를 비교 분석하면서 세 가지 순수한 통제 유형 - 교회,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 을 제시하였는데, Walter(2005)는 장례가 시립화되어 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의 소임을 수행은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음을 논하면서 교회와 민간기업이 장례식을 집행하는 주요한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교회,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은 앞으로 살펴볼 스웨덴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5장 스웨덴 장례 복지 제도 분석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복지국가 유형론과 종교의 역할

세 가지 유형의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한 Esping-Andersen(1990)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국가-시장’의 관계에 따라 자유주의 체제와 조합주의 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구별된다. 그리고 복지국가 모델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주목 받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중 하나는 개인을 시장과 전통적 가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Esping-Andersen은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복지 제공자로서 중요한 기구인 ‘교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국가의 활동이 시장과 가족의 역할과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교회의 역할은 주로 조합주의 체제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동체 사회에 갖는 의미만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이 같은 한계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이론이 경제와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 제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처럼 한 사람의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논의로 확장하게 되면,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드러난다. 이처럼 국가와 시장의 관계로 복지국가 유형론을 설명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기업을 중심 주체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는 논의(Hall and Soskice, 2001)²⁾ 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교회의 특수한 역할과 지위에 대

2) Hall and Soskice(2001)는 복지국가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자유시장경제 체제(LME)와 조정시장경제 체제(CME)로 분류한다.

한 설명은 부재하다.

이처럼 전통적인 복지국가 논의들은 국가나 노동 계급, 시장(기업)이 사회 정책에 미친 영향에 주로 관심을 가짐에 따라, 사회 보호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라는 기관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체제 복지국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주요 논의 가운데 Manow and Kersbergen(2009)은 사회 정책에 대한 기존의 권력자원이론이 주로 사회주의 노동 계급이 복지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을 강조함에 따라 오늘날 사회 보호 체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 종교의 역할을 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사회보장 체제를 이끄는 데 종교가 해운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가톨릭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 지출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논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Anderson(2009)은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에서 종교 변수가 눈에 띄게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기에 스웨덴 교회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는 스웨덴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루터교가 가난에 대한 설명을 신의 뜻으로 여김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국가의 적극적 빈곤 대책 개입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가난한 이들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가 세속적인 지방 자치 단체로 책임이 이전되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실생활 속에서 교회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는 오늘날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는데, 해당 논의를 현재 시점으로 확장시킨 연구로 Hiilamo(2012)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Hiilamo(2012)는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 두 경기 침체기의 북유럽 복지국가 맥락에서 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 교회는 빈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도맡고 있음을 경험 자료를 통해 논증하면서 기존 논의 - 사회서비스의 제공자 축이 교회에서 정부로 옮겨졌다 - 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이처럼 복지국가 논의를 노동이나 연금 문제의 틀에서 빠져나와 빈곤 퇴치와 같은 공공복지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게 되면 복지국가에서 종교 기관이 갖는 위상은 달라진다. 복지국가에서 종교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복지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첫째, ‘이데올로기’로서 종교가 복지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흐름과 둘째, ‘제도’로서의 종교가 복지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 연구, 셋째, ‘문화’로서 종교가 복지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먼저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 이념으로서 종교가 복지국가 형성이 미친 영향에 집중한 연구 가운데 Wilensky(1981)는 가톨릭주의가 좌파주의보다 복지국가 형성에 더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가난으로부터 사람들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추구하였던 가톨릭주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및 해방을 중요시하였던 좌파주의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제도로서 종교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연구한 Jawad(2012a; 2012b)는 영국의 종교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종교가 국가의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제도적 역할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Wineburg(2001)는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종교 공동체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Wineburg(2001)는 미국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역의 빈곤 문제에 대하여 종교 단체가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압력이 발생하였음을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중심으로 약 20년간의 데이터를 대통령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여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한 국가의 문화 또는 신념의 차이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함을 분석한 연구로 VanHeuvelen(2014)는 종교의 세 가지 차원 - 소속, 행동, 상황 - 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조사하였다. 예컨대, 종교적으로 이질적인 국가는 국가 보호를 덜 지지하는 반면, 동질적인 국가 특히 가톨릭 국가의 사람들은 국가 보호를 더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Castles(2019)은 종교적 신념과 세속화 정도에 따라서 국가별 공공정책이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특히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 그룹에서 독특한 가톨릭 국가 집단이 식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 태도를 문화의 속성으로 묶고 이것들이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상이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Van Oorschot, et al., 2008)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

는 유럽 복지 모델과 북미, 아시아 등 다양한 복지 모델을 비교하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국가별로 사람들이 복지정책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주었다.

4. 가족과 복지국가

Orloff(1993)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이론이 국가와 시장의 관계만을 주목함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Orloff(1993)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델이 여성의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논의는 이후 복지국가 모델 연구에서 젠더 문제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Orloff의 연구가 복지국가 체제 분석 프레임의 ‘젠더화’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다양한 주제의 젠더 기반 복지국가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해당 논의들의 공통된 지점은 돌봄에 내재된 젠더 불평등(특히 여성의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의 문제)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점이다(Lewis, 2002; Pfau-Effinger, 2005). 이러한 복지국가 이론의 젠더화 필요성에 대하여 Esping-Andersen은 『끝나지 않은 혁명』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함을 주장하면서 독신모, 이혼 가족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불평등 급증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며, 복지국가의 젠더 논쟁을 세대 불평등 문제와 결합시키며 논의를 보다 더 확장해 나갔다(Esping-Andersen, 2009). 그러나 복지국가와 젠더, 세대 논의는 성평등 문제 또는 위기 가정의 문제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공서비스에서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인 ‘가족’이라는 제도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에는 관심이 소홀했다. 특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체제론에서 가족에 대한 논의가 주로 노동 현장의 성불평등 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한 점에서 복지국가 논의에 가족을 주요한 행위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Sainsbury(2012)의 연구는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Sainsbury(2012)는 사회

서비스 맥락에서 ‘가족’이 모든 복지국가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돌봄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복지국가의 중심축으로 ‘국가’와 ‘시장’뿐만 아니라 ‘가족’을 중심축에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들이 주장한 내용 -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은 탈가족화라는 점 - 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Sainsbury(2012)가 복지국가 체제 유형에 ‘돌봄과 사회서비스’라는 비교 축을 추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돌봄과 사회서비스 축을 복지국가 논의에 포함하면 가족의 역할은 모든 복지국가 체제에서 중요한 행위 주체가 되는 것이다. 다만 Sainsbury(2012)는 ‘가족’을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즉,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의미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복지국가 유형별로 가족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의미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5장에서 다루게 될 스웨덴의 장례식 수행 기관의 관계도에서 가족의 의미가 변화 및 확장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논의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에서 친밀성과 연대를 강조하는 새로운 차원의 가족으로 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복지국가 논의에 가족이라는 제도를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역할과 의미를 재검토하는 것은 복지국가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³⁾

5. 스웨덴 장례 복지 제도 분석

본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장례 복지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문헌자료들을 조사 및 수집,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크게 공공자료와 민간 자료, 학술자료로 구별된다.

3) 이와 관련하여 복지국가 생성 이전에 질병과 노령, 장애 등 가족 내에서 제공되는 돌봄 노동의 핵심 기관으로서 가족에 대한 논의를 복지국가 논의의 중심으로 돌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McDonagh(2015) 논의 참조.

공공자료는 스웨덴 국가 공식 홈페이지와 국세청, 교회 홈페이지 등이며 민간 자료는 장례기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포함하며, 학술자료는 학술지에 출판된 연구물들을 말한다. 각각의 자료들은 인터넷(구글 스콜라 및 구글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검색 언어는 스웨덴어를 사용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다음과 같다: Begravning(장례), Begravningsavgift(장례비/장례세), Begravningslag(장례법), Begravningen(장례식), Begravningsförordningen(장례 조례), Kremering(화장), Död(사망), Svenska kyrkan(스웨덴 교회), Efterlevandepension(유족연금), Kyrkoavgiften(교회비), Begravningsombud(장례 대리인) 등. 수집한 자료들의 경우 2023년 12월 18일 검색일 기준으로 조회한 내용들임을 밝힌다. 이외에도 스톡홀름(Stockholms)과 같이 스웨덴의 주(län)와 트라노스(Tranås)와 같은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Kommun), 카운티 행정위원회(Länsstyrelse)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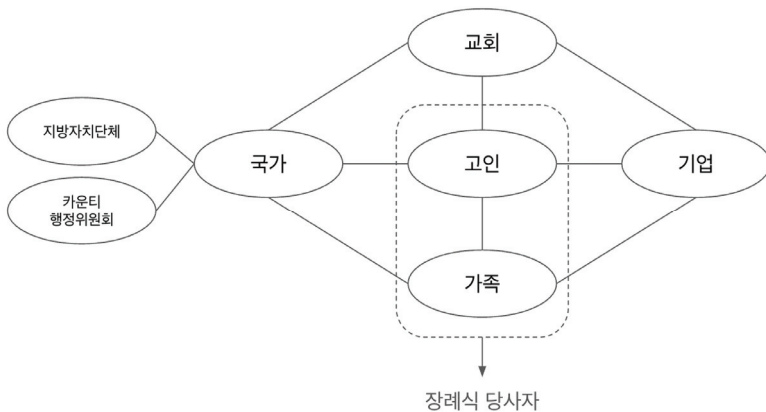
5.1 장례식 수행 기관: 국가, 교회, 기업, 가족

스웨덴 시민의 장례식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으로 국가와 교회, 기업이 있으며, 장례식 당사자로 고인과 가족이 있다(<그림 1> 참조). (1) 국가의 경우, 장례법을 제정하고 장례비를 청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교회는 장례비에 포함된 항목들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장례비가 올바르게 처리되는지 관리 감독하고 종교가 없는 시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례대리인’을 선정한다. (2) 교회는 스웨덴 장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스톡홀름과 트라노스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장례비에 포함된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기관은 스웨덴 교회 분당이다. 스웨덴의 교회는 2000년부터 국가로부터 분리되었으나, 죽은 자를 돌보고 처리하는 공공 서비스의 업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여전히 스웨덴 사회에서 장례식은 스웨덴 시민과 교회 사이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 중 하나이다(Evertsson, 2002; Gustafsson, 2003). 한편, 대부분의 공설 묘지는 교회 부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교회의 중요한 공공 역할 가운데 하나는 교인뿐만 아니라 교인이 아

4) 본 연구가 참고한 각종 문헌자료 목록은 참고문헌의 인터넷 자료 목록 참조.

닌 모든 사람을 위한 장례식 제공과 묘지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는 스웨덴 교회가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서 스웨덴 교회가 ‘민중 교회’라는 개념에 공감해 나가면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역사적 건물의 유지보수와 장례에 대한 역할은 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와 오랜 기간 합의해 나간 결과이기도 하다(Gustafsson, 2003). (3) 스웨덴 장례식에서 국가와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스웨덴 장례지도사는 시신을 처리하는 일에서부터 유산 상속과 같은 법률 서비스까지 일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주로 장례지도사들은 장례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 예를 들어 음악 연주나 꽃, 관 등 각종 장례용품과 예식 진행, 장례식장 선정 등을 상담하고 조율, 준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에는 종교 공동체 제도 외에서 진행되는 ‘시민 의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례의 개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장례기업들은 새로운 의례(ritual) 서비스를 기획하여 소비자에게 제안하고 있으며 예배당이 아닌 다양한 공간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개인화와 개성화를 강조하는 장례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Jarnkvist, 2018).⁵⁾ 한편, 스웨덴의 장례기업들(장례식장, 장례지도사)은 연합체를 구성하여 장례 산업 및 종사자 권익 보호 활동을 비

<그림 1> 스웨덴 장례 복지 논의의 기본 틀



5) SBF 홈페이지(<https://www.begravningar.se>), Fonus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fonus.se>) 참조.

롯데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장례 산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을 촉구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장례기업 연합 단체로 스웨덴 장례식장/장례지도사 협회(Sveriges Auktoriserade Begravningsbyråer/Sveriges Begravningsbyråers Förbund, SBF)와 Fonus 협동조합이 있다. SBF의 경우 1992년에 창설되어 약 400개 개인 소유 장례식장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회원 인증제도를 통해 협회로부터 승인된 장례식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 만족과 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추구해 나간다. Fonus는 1945년 스톡홀름에서 장례지도사 협회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장례식장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금융 협회로 단체의 정체성을 위치 지으며 가맹 조합원들에게 법률 도움 등을 지원하고 있다.

5.2 스웨덴 장례의 공공성

스웨덴의 장례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스웨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장례법과 장례비를 통해 알 수 있다. 스웨덴에 등록된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장례비를 지불해야 하며, 장례를 치를 수 있거나 치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장례를 대신 책임진다. 고인의 재산에 금융 자산이 없는 경우, 장례식과 화장 및 매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아래 <표 1>은 스웨덴 장례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

<표 1> 공공 영역에서 나타나는 장례의 의미

구분	내용	출처
Begravningslag (장례법)	스웨덴의 장례법은 공공 매장지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장례법에서는 스웨덴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스웨덴 교회는 공공 매장지와 화장장을 조직 및 운영하는 핵심 주체 이다.	·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구분	내용	출처
Begravningsavgift (장례비/장례세)	<p>스웨덴에 등록된 사람은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장례서비스 비용(장례비/장례세)을 지불해야 한다. 장례비는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스웨덴 교회 본당과 목회자들은 장례 운영을 책임지며, 단, 스톡홀름과 트라노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운영한다. 장례비에는 매장지 관리, 화장, 매장이 완료될 때까지의 운송, 장례식 장소, 25년 동안 공공 묘지 무덤 사용에 사용된다. 단, 개별장례(관, 개인 묘지 유지 관리, 비석 유지 관리, 예식)와는 연계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 스웨덴 국제청 홈페이지 • 스웨덴 법률·금융 및 행정 서비스 기관 홈페이지 • 스웨덴 교회 홈페이지
	<p>스웨덴 의회는 2017년부터 통일된 장례비를 결정했다. 0.246%에 달하는 새로운 장례비는 스웨덴 교회가 장례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등록부에 등록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스톡홀름과 트라노스에서는 자치단체가 장례 운영의 주체이므로 이들 자치단체의 주민들은 다른 장례비를 부담하게 된다. 전국 평균 장례비는 0.23%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통계청
Begravningsombud (장례 대리인)	<p>장례 대리인은 장례식 운영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스웨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카운티 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장례나 매장, 화장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나 질문에 대응한다. 최종 안치 장소와 관련해 친척들 간 분쟁 발생 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스톡홀름 카운티 행정위원회 홈페이지 • 스웨덴 교회 고용주 협회 홈페이지

이다. 이 가운데 장례 대리인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익이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주로 맡으며, 장례비가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5.3 국가로부터 교회 분리와 교회의 시장 진입

2000년에 들어서 스웨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해에 스웨덴 교회가 국가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교회-국가의 분리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분리 모델이 검토되었던 시기는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부터 약 10년간 교회와 국가 위원회는 스웨덴 교회와 국가 간의 미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보고서에서 몇 가지 실현 가능한 교회-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교분리안에는 종교의 자유 문제뿐만 아니라 회비 징수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국가 교회로서의 성격을 갖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는 교회 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1994년에는 마침내 스웨덴에서 교회와 국가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 교회는 복음주의-루터교 교단으로 남을 것, 스웨덴의 모든 지역이 하나의 교구 안에 속할 것, 각 개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교구에 속할 것, 주교 구조와 연결된 민주적 조직을 가질 것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스웨덴 교회법을 공포할 것”(Gustafsson, 2003). 1995년에는 교인이 아닌 사람도 모두 묘지 관리 비용으로서 장례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장례에서만 모든 스웨덴 국민이 교회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2000년 정교분리로 대규모 교인 이탈이 예상되었으나 회원 수는 심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스웨덴 인구의 약 53%가 스웨덴 교회의 회원이며, 스웨덴의 종교적 유산의 존재는 여러 기독교 휴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스웨덴 사람들은 세례식이나 결혼, 장례식에서 스웨덴 교회의 존재와 예식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2004년 기준 사망자 가운데 총 88%가 스웨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장례 예식은 여전히 스웨덴 교회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안수 받은 목사만이 집례할 수 있는 예식으로 장례가 치러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장례는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사역 활동이기도 하다(Bremborg, 2004). 그러나 스웨덴 교회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00년대를 기점으로 의례 장소로 교회 이용 감소와 시민의례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례가 가능한 장례서비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장례식에 목사를 부르지 않고 장례지도사로 예식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세속적인 장례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존재감과 예식 역할 수행 능력도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세속적 장례식(시민의례)이 증가함에 따라 사제와 장례지도사 간의 경쟁 구도는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한편, 2005년은 교회-기업 간의 경쟁 구도가 재편된 해이다. 이 해에 교회에서는 장례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장례 산업의 변화 기류는 Bremborg(2004)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다. Bremborg(2004)는 스웨덴 사제와 장례지도사 간의 경쟁 구도에 대해 주목하면서 현재 서로의 업무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교회가 장례기업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장례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화장장과 매장지가 교회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고, 모든 국민이 세금으로 장례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장례의 공공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교회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사설 장례식장이 지역에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교회 목사들이 해당 장례식장에서는 장례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지역 교회의 반발이 심하여 장례식장 개업이 쉽지 않다.

교회의 장례 산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교회 장례식장(Kyrkans Begravningsbyrå)’은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16개가 운영 중이며 스웨덴 교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장례 업계의 반응은 매우 격렬하다. 장례기업들은 스웨덴 교회의 장례식장 사업이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교회가 장례업을 겸하게 될 때 “장례비(세금)의 불투명한 집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실제로도 이미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회색지대”가 존재함을 비판하면서 교회의 상업 활동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 교회는 장례식장, 묘비 판매 및 석재 설치 사업을 강화했다. 석공과 장례지도사들에 따르면 **이 시장은 납세자의 돈으로 대부분 자금을 조달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다.** 교회 이사회 멤버인 라스 존슨은 “물론 회색 영역이긴 합니다.”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 작년 11월 교회 협의회는 교회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운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 이전에도 2005년 이후 총 14개의 교구가 장례식장을 운영했지만, 결정 이후 3개월 동안 5개의 장례식장이 추가로 문을 열었다.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1980년대 이후 전체 발전 과정을 요약하면 묘지에서 교회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트롤헤탄에서 페테르손 석공소를 운영하는 마그누스 베르글룬드는 “업계 동료들이 우리의 경쟁자이지만 **교회가 등장하면서 가장 큰 경쟁자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 교회 활동의 재원은 크게 두 가지 수수료, 즉 스웨덴 교회 교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교회세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장례비(장례세)로 충당된다. 2020년 교회비는 전체 매출 243억 크로나 중 약 60.5%를 차지했고, 장례비는 약 21%를 차지했다. **문제는 모든 스웨덴 국민이 납부하는 이 세금이 스웨덴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교회 자체 활동에 사용되면 경쟁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건물 비용이 들지 않고 직원 인건비도 저렴하다. [...] 2004년부터 교회가 자체 장례식장을 설립한 일부 본당에서는 민간 장례식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Kungsör와 Fagersta에서는 교회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작성자: Henrik Svidén, 기사 출처: Tidningen Näringslivet⁶⁾, 2023년 4월 13일)

“**장례 싸움을 벌이는 스웨덴 교회.** [...] **장례 업계는 스웨덴 교회의 성도들이 자체 장례식장을 시작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작년에 교회 총회는 회중들이 자체 장례식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로 투표했다. 그때까지 몇몇 본당은 이미 전국적으로 교회와 충돌하는 자체 장례식장을 열어왔다. 장례 업계 단체인 SBF와 Fonus는 스웨덴 교회가 두 자치단체(스톡홀름과 트라노스)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장례 운영에 대한 국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왜곡된다고** 말한다. [...]”

6) Tidningen Näringslivet 매체는 기업이 정신, 경제, 노동 시장 및 비즈니스 정책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위한 비즈니스 관련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 시장과 고용주 및 일자리 창출자로서의 기업 역할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제공한다.

SBF는 이는 **불공정한 경쟁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 SBF와 Fonus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Håbo에 있는 장례식장을 스웨덴 경쟁 당국에 신고했다.” (작성자: TT, 기사 출처: Tidningen Näringslivet, 2023년 10월 16일)

“**교회의 장례식장을 허용하지 말라.** 이는 공권력 행사와 상업적 이익의 혼합을 초래한다. [...] **권위 행사와 그에 따른 상업적 이익을 융합하는 교회 장례식장 허용을 중단하라.**” (작성자: Jan Olov Andersson, 기사 출처: Kyrkans Tidning⁷⁾, 2022년 9월 22일)

“**본당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나쁜 제안이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장례식장 운영 주체로서의 임무와 충돌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은 피해야 한다. [...] 더욱이 **매우 이상한 경쟁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교회가) 경쟁하는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 다른 어떤 장례식장도 (교회보다) 이만큼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없다.” (작성자: Jan Olov Andersson, 기사 출처: Kyrkans Tidning, 2022년 8월 27일)

이에 대하여 교회 장례식장(Kyrkans Gravningsbyrå i Sverige AB)의 CEO이자 목사인 Henrik Rydberg는 비판 기사를 작성한 장례기업 Ignis의 CEO인 Jan Olov Andersson을 비판하며 그가 건전한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자문(自問)할 것을 요청하였고, 교회 장례식장은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Jan Olov Andersson이 경쟁에 직면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Andersson은 지난 5년 동안 누적된 손실을 보고했으며, 그의 재단 활동은 경제적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임은 잘 알려져 있고, 재단이 명백히 경영에 실패한 장례식장을 유지하는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 **장례식장 업계의 대표자들이 교회 장례식장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 차**

7) Kyrkans Tidning 매체는 스웨덴 교회와 교회 문제를 주요 취재 분야로 다루는 신문이다.

원의 교회 정치인들이 교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작성자: Henrik Rydberg, 기사 출처: Kyrkans Tidning, 2022년 9월 7일)

장례를 둘러싼 교회-기업의 경쟁 구도는 각자의 서로 다른 전략으로 강화되고 있다. 교회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기관으로서 서비스 품질이 강조되고 있으며 삶의 중요한 사건인 세례와 장례에서만은 사회와의 결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Pettersson, 2000). 즉, 계속해서 교회의 구속력은 약화되고 교회 회원 수도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의 생존과 복음의 의미 차원에서도 삶의 주요 통과의례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장례기업 역시 교회와 경쟁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종교 방식으로 의례를 희망하는 새로운 고객의 수요를 감지하고 있으며 고객의 취향에 맞춘 새로운 예식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의례의 상품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장례업을 차별화하는 움직임도 보인다(Bremborg, 2006).⁸⁾

5.4 친족의 의미와 가족관계의 확장

스웨덴 장례식 수행 기관들의 관계와 상호작용 안에서 장례식의 주요 당사자인 ‘가족’의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스웨덴이 가족을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은 다양한 장례 관련 문헌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Anhörig(친척)’는 장례법 등 국가 공식 자료에서 언급되는 표현으로 번역하면 가족이나 친척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친척’으로도 번역되며 ‘Närstående(친척)’ 단어와도 병행해 쓰인다. 예컨대, 스웨덴 생존자 가이드 홈페이지⁹⁾에

-
- 8) 대표적인 스웨덴 장례 기업 Fenix는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희망 사항에 따라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하면서 교회장례식이든 일반장례식이든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자료출처: Fenix 홈페이지(<https://fenixbegravning.se>)
- 9) 스웨덴 생존자 가이드 홈페이지(<https://www.efterlevandeguiden.se>)는 최근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스웨덴 당국(사회보험청, 연금청, 국세청)에서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서는 ‘Nära anhörig(가까운 친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상실의 슬픔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생존자의 범위를 넓은 의미에서 ‘가까운 친척’으로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Närstående’는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 같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포함한다. 공공자료 및 민간 자료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로서 ‘가족’을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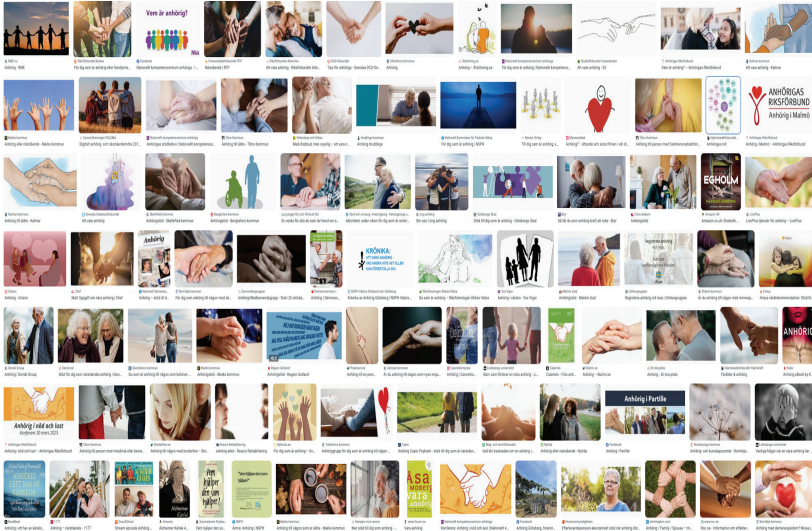
<표 2> 장례에 관한 공공 및 민간 자료에서 나타나는 가족/친척의 의미

출처	내용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p>“누군가의 사망한 경우, 친척이나 가까운 친족으로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매장을 주선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그의 화장 및 매장 희망을 따라야 한다.”</p> <p>“När någon har avlidit, bör hans önskan om kremering och om gravsättningen såvitt möjligt följas av den som i egenskap av anhörig eller närstående eller annars ordnar med gravsättningen.”</p>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p>“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 여기에서는 배우자, 파트너 또는 자녀의 다른 부모 등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귀하에게 중요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p> <p>“För dig som har förlorat en närstående ... Här har vi samlat information som kan vara viktig för dig som har mist en närstående, till exempel maka/make, partner eller den andra föräldern till ditt barn.”</p>
스웨덴 연금청 홈페이지	<p>“친족 사망 시 경제적 지원 - 유족연금 [...] 가까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친족으로서 유족연금을 경제적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p> <p>“Ekonomiskt stöd när anhörig dör - efterlevandepension ... När en nära anhörig dör kan du som närstående få efterlevandepension som ett ekonomiskt stöd. Efterlevandepension ingår i den allmänna pensionen och består av barnpension, omställningspension och änkepension.”</p>
스웨덴 국세청 홈페이지	<p>“친척이 사망한 경우 [...] 가까운 친척(예: 배우자, 파트너 또는 자녀의 다른 부모)을 잃은 경우 어떤 형태로든 국세청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p> <p>“När en anhörig dör ... Om du har mist en närstående, till exempel maka, make, partner eller den andra föräldern till ditt barn, behöver du ofta ha kontakt med oss på Skatteverket i någon form.”</p>

출처	내용
스웨덴 장례기업 (Eskilstuna Begravningsbyrå)	“ 가까운 친척? [...] 가까운 친척은 가족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결혼한 부부와 동거하는 부부도 포함됩니다. 적용되는 것은 현재의 관계입니다. 즉, 별거로 인해 가족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 Nära anhörig? ... Nära anhörig är den som sitter tillsammans med familjen. Dit räknas även ingifta och sambos. Det är den nuvarande relationen som gäller. Med andra ord förändras familjeförhållandet vid separation.”
스웨덴 생존자 가이드 홈페이지	“ 가까운 친척 이 사망했을 때 모든 일에 대처하려면 직장을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귀하에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문의하십시오. [...] 배우자, 남편, 동거인, 등록 파트너, 자녀, 손자,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조부모 및 시부모는 가까운 친척 으로 간주됩니다.” “För att orka allt när någon nära anhörig dör kan du behöva ta ledigt från arbetet en tid. I vissa fall är det möjligt utan avdrag på lönen. Kontakta din arbetsgivare om vad som gäller för dig. ... Som nära anhörig räknas maka, make, sambo, registrerad partner, barn, barnbarn, syskon, föräldrar, morföräldrar, farföräldrar och svärföräldrar. ”

<표 2>에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스웨덴 생존자 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스웨덴의 가족 개념은 좁은 의미의 직계 혈연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고 생전에 가깝게 지냈던 친밀한 관계로서 개념화되어 있다. 이는 스웨덴 사회가 개인의 사회적 안녕(social-wellbeing)으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해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Anhörig’을 검색하면 <그림 2>와 같은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의지하고 기대는 사진들이 다수 조회되었다. 이는 ‘Närstående’을 검색했을 때와도 유사하다(<그림 3> 참조). 반면, 혈연 가족을 의미하는 협의의 가족으로서 ‘Familj’을 검색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모습의 이미지들이 검색된다(<그림 4> 참조).

<그림 2> 구글 이미지 검색 (검색어: Anhörig)



<그림 3> 구글 이미지 검색 (검색어: Närstående)



‘Anhörig’와 ‘Närstående’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단어는 노인의 이미지와 돌봄, 케어, 간병인과 같은 이미지들이 연결된다. 이는 스웨덴이 2008년 1월에 설립한 ‘친족국가역량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친족국가역량센터(Nationellt kompetenscentrum anhöriga, Nka)는 정부를 대신해 친족지원을 위한 국가역량센터로서 가족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카운티 의회 및 개인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스웨덴은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따라 2009년부터 지자체가 친척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서로의 돌봄과 지원, 도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도 스웨덴 사회에서 이해하는 가족은 삶의 위기나 위태로움 속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밀한 친척’이면서 ‘사랑하는 사람’¹⁰⁾이다. 이는 가족을 혈연 집단으로 배타적으로 정의하는 한국 사회와 다른 가족관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구글 이미지 검색 (검색어: Familj)



10) 스웨덴 초보자 가이드(<https://www.thenewbieguide.se/>)에서는 장례식 준비에 대한 영어 설명문에서 친족 대신 ‘a loved o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톡홀름시 홈페이지에서는 ‘Anhörig’와 ‘Närstående’의 의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Anhörig’ 또는 ‘Närstående’라고 부를 수 있는 주체들의 역할을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 ‘정신 질환 또는 장애’, ‘약물 남용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가까운 사람을 지지하거나 도와준다면 그가 배우자이든, 파트너이든, 동거인, 자녀, 손자, 부모, 형제자매, 친구 또는 이웃이라 하더라도 친척으로서 스톡홀름시에서 지원해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이 ‘Anhörig’ 또는 ‘Närstående’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친척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어떤 돌봄을 친척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국가는 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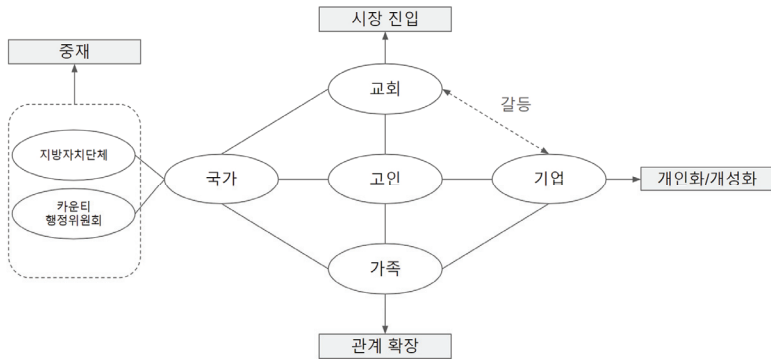
“[용어정의] **가까운 사람/친척(Närstående)**이란 가까운 사람은 돌봄, 간호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족/친족/친척(Anhörig)**이란 가까운 사람을 돌보거나 돕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족/친족은 흔히 배우자나 동거인일 수 있지만, 자녀나 손자, 또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 같은 주변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자신을 가족/친족으로 여길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한다. [Ordlista] Närstående: Du som är närstående är den som tar emot omsorg, vård och stöd. Anhörig: Du som vårdar, hjälper eller stödjer en närstående är anhörig. Ofta är anhörig en maka, make eller sambo men det kan också vara ett barn eller barnbarn eller någon annan i den nära kretsen runt den närstående, exempelvis en vän eller granne. Det är du själv som avgör om du ser dig själv som anhörig.” (출처: 스톡홀름 시 홈페이지 <https://start.stockholm>)

5.5 소결

오늘날 복지국가 유형 가운데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장래 복지 제도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의 장래는 국가-종교(교회)-기업-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이론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은 ‘종교(교회)’라는 집단에 주목하면서 스웨덴의

공공서비스인 장례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스웨덴의 장례 영역은 교회의 민간 서비스 확장에 따른 장례기업과의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업은 교회의 장례사업 운영을 ‘불공정한 경쟁’으로 진단하고 비판하고 있으며, 교회는 교회의 기본 업무로서 ‘보편적 장례서비스’를 위한 노력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중재 역할을 강화해가고 있는데,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장례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는 장례 준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끝으로 장례에서 중요한 행위 주체인 ‘가족’의 경우, 혈연관계보다 ‘가까운 친척’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사랑과 친밀성, 신뢰로 형성된 관계를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장례 진행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각종 법령과 정책 등)가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 스웨덴 장례 수행 기관별 상호작용과 변화 양상



6. 나가며

장례는 한 사회의 도덕과 규범, 가치 체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생활

양식이다. 국가의 장례 제도를 살펴보면 그 나라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인간·가족·공동체에 대한 관념과 관습적 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복지국가 운영 원리는 단순히 노동-시장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과 가족, 공동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이 제안하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대표 국가인 스웨덴의 장례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복지국가 운영 원리가 인간의 죽음을 다루는 장례에 어떻게 배태되어 작동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에는 ‘교회’라는 기관이 장례 진행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존재하였으며 교회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장례비(세금)로 운영되는 필수적인 매장지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공식 역할과 다른 하나는 교인이나 비교인을 위한 장례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적 서비스 확장을 통해 교회가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의 의미는 전통적 가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이를 확장하여 친밀성과 신뢰,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족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돌봄을 인정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구축으로 스웨덴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스웨덴 장례 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교회의 시장 진입’과 ‘가족관계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복지국가 이론에서 스웨덴 모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이는 복지국가 관련 제도 논의가 단순히 법과 행정의 틀을 수입하거나 벤치마킹을 통해 작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사회의 뿌리 깊은 인간과 죽음,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거미줄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주제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료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스웨덴 장례 정책의 국가-교회-기업-가족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심층 인터뷰와 같은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nderson, Karen M. (2009). "The Church as Nation? The Role of Relig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Religion, Class Coalitions, and Welfare States*, 210-235.
- Audebrand, Luc K., and Barros, Marcos. (2018). "All Equal in Death? Fighting Inequality in the Contemporary Funeral Industry", *Organization Studies*, 39(9), 1323-1343.
- Bremborg, Anna Davidsson. (2004). "Att Komplettera eller Konkurrera? Om Prästers och Begravningsentreprenörers Arbetsuppgifter och Ansvarsområden", *Svensk Teologisk Kvartalskrift*, 80(2), 73-83.
- _____. (2006). "Professionalization Without Dead Bodies: The Case of Swedish Funeral Directors", *Mortality*, 11(3), 270-285.
- Castles, Francis G. (2019). "On Religion and Public Policy: Does Catholicism Make a Difference?", Castles, Francis G, *Religion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529-550.
- Drakeford, Mark. (1998). "Last Rights? Funerals,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Policy*, 27(4), 507-524.
- Esping-Andersen, Go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UK; Malden, MA: Polity.
- Evertsson, Anna. (2002). *Går Vi Till Paradis Med Sång: Psalmers Funktion i Begravningsgudstjänster*. Lund: Arcus.
- Foster, Liam, and Woodthorpe, Kate. (2013). "What Cost the Price of a Good Send Off? The Challenges for British State Funeral Policy", *Journal of Poverty and Social Justice*, 21(1), 77-89.
- _____. (2016). "Funeral Welfare to the Grave", In Foster, Liam, and Woodthorpe, Kate, *Death and Social Policy in*

- Challenging Times*,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73-90.
- Gustafsson, Göran. (2003). “Church-State Separation Swedish-Style”, *West European Politics*, 26(1), 51-72.
- Hall, Peter A., and Soskice, David.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ilamo, Heikki. (2012). “Rethinking the Role of Church in a Socio-Democratic Welfare Sta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2(7/8), 401-414.
- Jarnkvist, Karin. (2018). “Reflektioner över Dop, Vigsel och Begravning”, *Nyckeln till Svenska kyrkan: En Skrift om Organisation, Verksamhet och Ekonomi*, Uppsala: Svenska Kyrkan, 7-17.
- Jawad, Rana. (2012a). *Religion and Faith-Based Welfare: From Wellbeing to Ways of Being*, Bristol: Policy.
- _____. (2012b). “Religion, Social Welfare, and Social Policy in the UK: Historical, Theoretical, and Policy Perspective”, *Social Policy and Society*, 11(4), 553-564.
- Korpi, Walter, and Palme, Joakim.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1-687.
- Lewis, Jane. (2002). “Gender and Welfare State Change”, *European Societies*, 4(4), 331-357.
- McDonagh, Eileen. (2015). “Ripples from the First Wave: The Monarchical Origins of the Welfare State”, *Perspectives on Politics*, 13(4), 992-1016.
- Manow, Philip, and Kersbergen, Kees Van. (2009). “Religion and the Western Welfare State: The Theoretical Context”, *Religion, Class Coalitions, and Welfare States*, 1-38.
- Marsh, Tanya D. (2018). “Regulated to Death: Occupational Licensing and the

- Demise of the US Funeral Services Industry”, *Wake Forest JL & Pol’y*, 5-27.
- Orloff, Ann Shol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3-328.
- Pettersson, Per. (2000). *Kvalitet i Livslånga Tjänsterelationer: Svenska Kyrkan ur Tjänsteteoretiskt och Religionssociologiskt Perspektiv*, Stockholm: Verbum.
- Pfau-Effinger, Birgit. (2005). “Welfare State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Care Arrangement”, *European Societies*, 7(2), 321-347.
- Sainsbury, Diane. (2012). *Welfare States and Immigrant Rights: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locum, Joshua L. (2018). “The Funeral Rule: Where It Came From, Why It Matters, and How to Bring It to the 21st Century”, *Wake Forest JL & Pol’y*, 89-109.
- Thompson, P., & Yeung, P. (2015). “‘Is a Funeral a Right?’ Exploring Indigent Funerals from Social Work Perspectives”, *Aotearoa New Zealand Social Work*, 27(1/2), 73-86.
- Valentine, Christine, and Woodthorpe, Kate. (2014).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Funeral Welfar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8(5), 515-536.
- Van Oorschot, Wim, Opielka, Michael, and Pfau-Effinger, Birgit. (2008). “The Culture of the Welfare Stat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rguments”, *Culture and Welfare State: Values and Social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1-28.
- VanHeuvelen, Tom. (2014). “The Religious Context of Welfare Attitud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3(2), 268-295.
- Walter, Tony. (2005). “Three Ways to Arrange a Funeral: Mortuary Variation in the Modern West”, *Mortality*, 10(3), 173-192.
- Wilensky, Harold L. (1981). “Leftism, Catholicism, and Democratic Corporatism: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Recent Welfare State Development”, In Flora, Peter ed.,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Books, 345-383.

Wineburg, Bob. (2001). *A Limited Partnership: The Politics of Religion, Welfare, and Social Serv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스웨덴 <https://sweden.se>

스웨덴 교회 고용주 협회 <https://www.svenskakyrkan.se/arbetsgivare>

스웨덴 교회 <https://www.svenskakyrkan.se>

스웨덴 국세청 <https://www.skatteverket.se>

스웨덴 법률·금융 및 행정 서비스 <https://www.kammarkollegiet.se>

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

스웨덴 생존자가이드 <https://www.efterlevandeguiden.se>

스웨덴 스톡홀름시 홈페이지 <https://start.stockholm/>

스웨덴 스톡홀름 카운티 행정위원회 <https://www.lansstyrelsen.se/stockholm.html>

스웨덴 연금청 <https://www.pensionsmyndigheten.se>

스웨덴 의회 <https://www.riksdagen.se>

스웨덴 장례 기업 (Eskilstuna Begravningsbyrå) <https://www.eskilstunabegravningsbyra.se/>

스웨덴 장례 기업 (Fenix) <https://fenixbegravning.se>

스웨덴 장례 협동조합 (Fonus) <https://www.fonus.se>

스웨덴 장례지도사 협회 (SBF) <https://www.begravningar.se>

스웨덴 초보자 가이드 <https://www.thenewbieguide.se>

스웨덴 친족국가역량센터 <https://anhoriga.se>

스웨덴 통계청 <https://www.scb.se>

<신문 기사>

Henrik Rydberg. 2022년 9월 7일. ““Skräckscenario” om kyrkliga begravningsbyråer som snarast är uppmuntrande”, *Kyrkans Tidning*.

Henrik Svidén. 2023년 4월 13일. “Så slår kyrkan ut svenska företag - tar marknad värd miljarder”, *Tidningen Näringslivet*.

Jan Olov Andersson. 2022년 9월 22일. “Värna förtroendet att sköta samhällets begravningsverksamhet”, *Kyrkans Tidning*.

Jan Olov Andersson. 2022년 8월 27일. “Församlingsdrivna begravningsbyråer ett dåligt förslag”, *Kyrkans Tidning*.

TT. 2023년 10월 16일. “Svenska kyrkan i begravningsbråk”, *Tidningen Näringslivet*.

<Abstract>

Analysis of Funeral Welfare System in the Welfare State of Sweden:

Focus on Changes in the Roles of Church and Family

Oh, Jimin^{*}

This study, recognizing the limitations in explanations of social democracy within existing welfare state discussions, focuses on public services in Sweden to complement these discussions by analyzing funeral welfare systems. Gathering and analyzing public, private, and academic literature,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key actors surrounding Swedish funeral culture as ‘state-church-business-family,’ confirming the essential role of the ‘church’ as a provider of public services in funerals within the Swedish welfare state model. Furthermore, the analysis identifies the recent adoption of a ‘dual strategy’ by churches. One aspect involves their public role in managing essential cemetery services funded by funeral fees (taxes), while the other involves the privatized provision of funeral services for parishioners and non-parishioners for a fee, indicating the ‘church market entry’. Meanwhile, the significance of family in funeral culture encompasses an ‘extended family,’ including intimacy, trust, and loving relationships within its scope. Summa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wedish funeral system, it can be described as the ‘church market entry’ and the ‘expansion of family relations,’ offering a new perspective on the Swedish model within existing welfare state theories.

Key Words: Welfare state, Funeral, Social democracy, Sweden, Church, Family

* Department of Sociology, Sogang University

성명: 오지민
소속: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E-mail: jimin.helen.oh@gmail.com

논문 접수일: 2024.5.5. 논문심사 완료일: 2024.7.3.
수정원고 접수일: 2024.7.9. 게재 확정일: 2024.7.9.